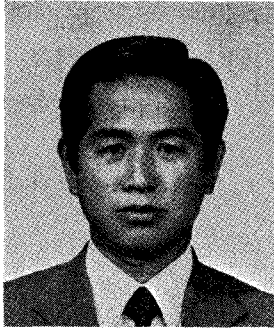


# 國際競爭에서 武器化된 特許權(完)



庚 麟 鳳  
〈特許廳 審査 4 局長〉

## 目 次

1. 美國의 特許制度 強化背景
  2. 美國의 強化된 知的財産權 制度
  3. 知的財産權의 國際間 摩擦
  4. 우리의 對應
-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 3. 지적재산권의 국제간 마찰

경제발전을 기술혁신에 의하여 이룩한 선진국은 국제 경쟁력 확보와 국제수지개선을 위하여 자국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교역국에 대하여도 산업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국제수지를 개선한 개발도상국과 기술마찰이 급증하게 되었다.

최근 국제간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화 됨에 따라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독점을 강화하려고 기술 보호주의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다. 첨단분야에서의 우위가 자국의 복지와 안전보장에 필수적이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곧 국제사회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첨단기술 개발경쟁과 기술독점 체제확충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기술 마찰의 특징은,

- ① 첨단기술 및 거대기술을 중심으로 마찰이 발생하고,
- ② 기업을 포함한 국가간, 국제 마찰이 빈번하고,
- ③ 개발된 핵심기술과 그 이전시에만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 단계나 연구개발체제도 마찰의 대상이 되며,
- ④ 기술의 이면성으로 인하여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성이 강한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정책과 결부된 국가간, 기업간이 계재된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기술 양대국인 미국과 일본 양국간에는 정부간 및 기업간에도 가장 많은 특허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특허청의 심사 지체를 정치 문제화하여 미·일 구조협의회(SII : 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와 Amorphous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 차원에서 제도의 부적합을 이유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도하였다.

### 가. 미·일 구조협약(1989. 9. 구성)

1989년 부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미측에서 저축, 투자, 토지정책, 유통제도, 가격기구, 계열거래, 배타적 관행 등 일본의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지적소유권 제도가 배타적 거래 관행으로 일본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예로써,

첫째, 특허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어 있어 발명을 권리화 하는데 장기기간이 소요된다.

둘째, 미국 기업에 주로 이의 신청이 많다.

셋째, 특허권의 해석폭이 너무 좁아 일본 기업을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1990년 6월의 SII의 최종보고에서 일본 정부는 5년 이내에 평균 특허심사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그 약속이행을 위하여 심사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즉, 심사관 정원을 증원(1991년에 심사관 101명 채용)하고, 전자 출원을 개시(1990년 접수시작)하며, 특허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의 외주화(1990년에 20,000건 외주) 등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양측은 구조협약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점검회의의 개최에도 합의하여 1991년 5월 첫번째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금년들어 1월초 부시 대통령의 방일시 구조협약의 사후 점검회의의 재활성화에 합의하여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나. 미·일 Amorphous 협의

1990년 3월 미 Allied Signal사가 일본의 High Tech 첨단재료시장 참여를 노리고 미국 통상법 제301조(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강제 제재조치)에 위반된다고 하여 시장 개방하도록 미국 통상 대표부에 제소한 것으로, 특히 제소이유 중에서 일본의 특허 절차가 복잡해서 Allied사의 Amorphous(비정질) 합금의 심사가 늦어져 출원 공고하기까지 11년을 소비했고 이로 인해서 특허 존속기간이 얼마

남지않게 되었고 또 그 사이에 일본 기업이 그 기술을 모방하거나 주력회사가 Allied사의 Amorphous 합금의 불구입 동맹을 하여 1억 \$이상의 일본 시장에서 Allied사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일 협의회에서 일본 측은 특허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았고, 공동 불구입 Boycott도 없었다고 반론하였으나, 미측은 Amorphous 특허의 특허기간연장과 Amorphous를 사용한 변압기의 구입 약속을 요구하였다.

결국 특허기간 연장 문제는 일본 특허법상 불가한 것이었으나, 일본의 철강 Maker는 Allied사의 Amorphous 합금의 성형에 관한 특허기간 완료 1993년 후에도 그후 4년간 변압기용의 동합금을 생산하지 않으며, 일본의 주력각사는 변압기 구입을 위한 시험기간을 대폭단축해서 1993년 3월까지 완료하며, 32,000대의 변압기를 주력 각사가 구입하기로 하였다(일본 변리사: 오-가와 아끼라).

한편 기업간의 분쟁 전개면에서 1986년 1년동안 미국의 반도체 Maker인 Texas Instrument사(TI)는 일본 전기, 후지츠 등 8개사와 한국의 삼성반도체 통신을 상대로 DRAM 반도체 침해 특허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법원과 국제 무역 위원회에 제소하여 법정분쟁을 야기한 바 있고,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협상을 한국 정부와 진행시킨 끝에 1986년 6월 21일 제 301조 협상을 일괄타결하게 되었고 우리 정부는 1987년 7월 관계법령을 대폭 개정하였다.

### 다. 한·미간 협의

한·미간 제301조 협상타결에 한국은 지적재산권 관련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87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특허법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Computer-Program 보호법도 아울러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외국인의 지적재산권도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보호받게

되었다.

한편 1987년 Budapest조약, 세계 저작권 협약 및 Geneve은 음반협약에 각각 가입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관하여는 국내적, 국제적으로 확실한 제도의 틀을 갖게 되었다.

많은 한국정부의 노력의 결과 통상법 제 301조를 개정하여 제301조 조사개시 및 보상 조치 권한을 대통령으로 부터 이관받은 USTR(U.S Trade Representative : 무역대표부)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을 1989년에는 우선 감시 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으로 분류하고 '90, '91년에는 감시대상국(WL : Watch List)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1992년에는 또 다시 PWL로 상향 지정한 것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상태가 법제도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파상적인 공격이 예상되며, 이를 빌미로한 통상압력이 가중되리라 본다.

#### 4. 우리의 대응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인건비 상승, 노사문제 등의 국내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도先進國의 特許 攻勢와 덤핑 提訴등의 國外的인 분쟁까지 겹쳐 그야말로 內憂外患에 처해있는 한국 기업의 침병인 첨단산업, 이같은 한국의 尖端産業이 四面楚歌에 처한 昨今の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특허료의 비중이 7%만 넘어도 수익성을 상실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비하여 국내 첨단산업의 대부분이 매출액 대비 10%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금년도 국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20억불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위의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관계부처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제각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묘책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권리화를 통한 자주기술력의 확보와 국가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의 대응능력의 제고만이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대처 가능한 방안중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이 자본에서 기술로 이전되고 있음에 따라 기술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기술개발, 강력한 특허권 확보, 특허관리 체제강화가 이루어져 특허권을 무기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첨단 산업분야의 경쟁에서 자립 기술 확보없이 선진국의 기술속국으로 전락하리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립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효율적인 R&D 투자가 있어야될 것 같다.

세계주요 전자통신 관련 회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10%내지 16%에 상당하고, 일본의 50대 기업중 주요 18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가 설비투자액을 앞질렀다는 사실을 볼 때 국내기업도 경쟁력이 있는 기술분야에 대하여는 현재의 평균 2.1% 수준에 머물고 있는 R&D 투자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선진기업이 차세대 제품개발시 동제품에 이용하게 될 핵심 부품을 중점 개발하여 국산화율을 높임과 동시에 장기적인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2~3년 이내에 상품화 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적고 현장의 부품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소형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기술개발 착수 전에 선행기술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기술개발후 타기술이나 특허에 저촉되거나 그 이용에 있어 효과가 반감되는 중복투자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 발명자에게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채택하여 기술의욕을 고

취시키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서 개발된 기술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무기화되기 위하여는 강력한 특허로서 포장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기업이 지불하는 과도한 특허료의 원인이 연구개발 투자에 소홀하였다고 하지만 개발한 기술조차 경쟁력 있는 특허로 만들지 못한 특허관리 능력의 한계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강력한 특허로 만들기 위하여는 개발된 기술을 외국의 선행기술과 비교 검토하여 특허청구 범위를 적절히 작성함으로써 국내외 특허등록에 성공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특허획득 후 경쟁국에 대한 권리 행사 또는 특허심판 사건에서 확고한 위치를 지킬 수 있기 위하여는 기술과 법률 외국어를 겸비한 특허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허관리 체제강화, 정부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만 그 효과가 배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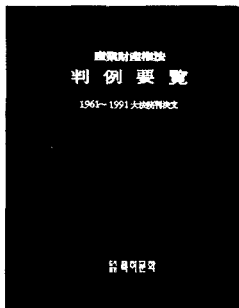
이다. 특허관리 체제강화에는 기업체에 우선 특허전담부서를 두고, 다음 단계로서 지적재산권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 생산 라인 시설, 영업 등 최종 타당성을 지적재산권 본부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그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고, 기업체 내에 기술정보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분쟁을 전담지도 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특허청내의 전산화가 앞당겨져 효율적인 정보 검색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과학기술 최우선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나가야 하는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시간안내

## 「産業財産權法 判例要覽」



도서출판 특허문화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집인 「産業財産權法 判例要覽」을 발간했다. 이 책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特許上告事件은 물론이고 民·刑事 등의 판례 전문·핵심이 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法律 條文別, 內容의 性格別, 判決宣告日字 순으로 편집되어 있어 이용하기 쉽고, 나날이 늘어나는 知的財産權 紛爭에 도움이 되는 실무서이며,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법령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엮여져 있다. (도서출판 특허문화(565-0205)(4×6배판, 470면, 20,000원)

시간안내

## 소련 총람

북방권연구회 편

규격: A5신·318면 가격: 5,000원

## 新商標法解説

江口俊夫 著 규격: A5신·352면

鄭完燮 譯 가격: 10,000원

판매: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 (전화 (02) 551-5571~2)